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1-108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및 근로자대표 선출 일정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던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노동법령에서 정한 '근로자대표' 선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및 근로자대표 선출

2. 선출방법(*** 노사협의회 근로자 준비위원회 회의 시 협의사항**)

1) 농림축검역본부 근로자위원 선거

① 근로자위원 위원선거인 및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 위원선거인 :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로서 사업장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배정

| 연번 | 구분 | 소속 | 성명 | 직종 | 비고 |
|---|---|---|---|---|---|
| 1 | 본부 | 바이러스질병과 | 송승민 | 시험연구원 | |
| 2 | 본부 | 방역감시과 | 안아진 | 콜센터상담원 | |
| 3 | 본부 | 동물검역과 | 박찬실 | 검역실무원 | 신청철회(2021. 2. 26.) |
| 4 | 본부 | 동물약품관리과 | 박혜정 | 시험연구원 | |
| 5 | 본부 | 바이러스질병과 | 주용이 | 시험연구원 | |
| 6 | 인천공항 | 휴대품검역1과 | 김영애 | 검역지원요원 | |
| 7 | 인천공항 | 시험분석과 | 김다운 | 시험연구원 | |
| 8 | 영남 | 시험분석과 | 정현주 | 시험연구원 | |
| 9 | 중부 | 시험분석과 | 김태현 | 시험연구원 | |
| 10 | 서울 | 전염병검사과 | 조나흔 | 시험연구원 | |
| 11 | 호남 | 식물검역과 | 황정희 | 검역실무원 | 퇴직(2021. 2. 15.) |
| 12 | 제주 | 식물검역과 | 양이슬 | 시험연구원 | |

② 선출 근로자위원 수 : 7명(보궐 근로자위원 3명 별도 선출)

③ 선거방식

- 위원선거인이 각 3명의 입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득표 동률 시, 1. 연장자 2. 재직기간 순으로 결정
-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 한 입후보자의 경우, 다수 득표 순에 따라 차점자를 보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④ 투표일시 : **2021년 3월 9일(화) 14시**

⑤ 투표장소 : 온나라 PC 영상회의(외부망)를 통한 대면 후 개인별 투표

※ 관외 사전투표 방식을 준용하여,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밀봉 후 등기 발송

⑥ 개표일시 및 장소 : ~ 2021년 3월 16일(화), 운영지원과

※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전체 수령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및 당선 확정 공고 예정

2) 농림축검역본부 근로자대표 선출

① 선출방식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7명이 근로자 대표 1명 호선(互選)

※ 득표 동률 시, 1. 연장자 2. 재직기간 순으로 결정

- 선출된 대표 1명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첨 1]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과반수 동의 시 호선된 1명이 관계 노동법령(「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자 대표'의 역할 겸임

※ 동의 절차 진행 시, '근로자대표 주요 권한'을 함께 공지

② 선출일정

1) 근로자위원 간 대표 1명 호선(2021. 3. 16.)

2)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근로자 대상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 진행 (2021. 3. 16. ~ 2021. 3. 25.)

3) 과반수 동의 시, 근로자 대표 확정 공고(2021. 3. 26.)

*** 전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 : 바이러스질병과 공무직근로자 최성숙**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1과 공무직근로자 고영숙**

**농림축산검역본부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별첨 1]

# 동 의 서

1. 의견조회대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근로자
2. 동의여부(동의 또는 반대 란에 'O' 표시)

– 동의사항 : 본인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이 호선한 000 근로자 대표위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령에서 정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겸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소속 | 직종/직위 | 성명 | 서명 | 서명일자 | 동의 | 반대 | 의견사항 |
|---|---|---|---|---|---|---|---|
| | | | | | | | |

**<근로자대표 주요 권한>**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협의'(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2.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4. 보상휴가제 '합의'(근로기준법 제57조)
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합의'(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6.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
7. 임산부 등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협의'(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 상기 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합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